

의안 번호	27
----------	----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09. 2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27호

다. 제출일자 : 2022. 09. 20.

라. 회부일자 : 2022. 09. 23.

2. 제안이유

- 우리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다. 위탁방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 치매 환자의 등록·관리
- 치매 등록 통계 사업의 지원
-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의 운영
-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 사업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마. 기존 위탁현황

기관명	소재지	규모	위탁기간(최초 위탁일)
건국대학교 병원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5층 (본소)	549.9㎡	2020. 1. 1.~2022. 12. 31. (2007. 6. 23.)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68, 장위석관보건지소 3층 (분소)	182.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2022년 12월 31일자로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1)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하는 시설이며,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 교육, 단기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1)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2. 29.>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 위탁시설 현황과 소요예산 및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위탁 시설명	위탁근거 (법령, 조례)	위치	위탁기간 (최초위탁일)	위탁 기관	시설 현황	직원 현황	연간지원금(천원) (국, 시, 구비)
성북구 치매안심 센터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북구 화랑로 63, 5층	2020.01.01. ~ 2022.12.31. (2007.06.)	건국 대학교 병원	보건소 5층 (549.9㎡), 장위석관 보건소 3층 (182.8㎡)	22	1,312,000 국-656,000(50%) 시-328,000(25%) 구-328,000(25%)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치매조기 검진	선별검진	1,132	3,706	4,400
	정밀검진	611	1,332	984
등록관리	신규등록	1,114	3,725	4,234
인지건강 센터운영	인지건강 프로그램 시행	6,787	14,931	13,160
저소득층 지원	원인확진검사비 지원	47	145	9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57	790	751
중증치매 공공후견	후견인 및 피후견인 매칭(누적)	1	2	3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치매관리법」 제20조제2항2)에는 구청장의 권한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3)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4)에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치매지원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 2) 「치매관리법」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 ‘치매안심센터’의 위탁 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5)에 따른 것으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6)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